

- 1. ②
㉠(헌법 제12조 제7항), ㉡(헌법 제12조 제7항), ㉢(헌법 제28조), ㉣(제27조 제4항)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.
- 2. ④
'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때를 말한다.(2010도4680)
- 3. ③
① 대면조사와 인치명령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고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(2008도11999).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. (2011도12927). ④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피의자를 구금하여야 한다.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.(95모94)
- 4. ①
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·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·수색을 할 수는 없다.(99모161)
- 5. ④
법관면전에서 자백을 획득하기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.
- 6. ② 증거보전사유 중 진술번복의 염려는 위험결정된 후 삭제됨.
- 7. ②
㉠㉡이 옳다.
㉠ 공소시효 만료일 “전날”까지 제출 ㉡ 임의적 부담.(제262조의3)
- 8. ④
현재지이송은 임의적 이송(제8조 제1항)
- 9. ②
①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 제기(제245조의3 제3항) ③ 귀가를 요청하면 즉시 석방해야한다. 6시간 동안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.(97도1240) ④ 고발가능성만 있다면 고발없는 수사라도 적법하다.(2008도7724)
- 10. ③
㉠ 3 + ㉡ 2,2,2,3 + ㉢ 6 + ㉣ 3 + ㉤ 3 = 24
- 11. ④ 도면등 특수매체도 개시대상인 서류등에 포함된다.(제266조의3 제6항)



미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.!



12. ③

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.(2000모112)

13. ①

㉠㉡㉢이 옳다.

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(제359조) ㉡ 즉시항고 가능(제360조 제2항) ㉢ 상대방에게도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.(제361조의2 제1항) ㉣ 답변서는 10일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(제361조의3 제3항)

14. ②

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. (2009도 2109)

15. ③

① 유리한 신법이 기준이 된다.(2008도4376) ② 특별법에 정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. ④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된다.(제252조 제1항)

16. ①

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제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(2009도6788)

17. ③

㉠㉡㉢㉣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(국참법 제17조)

18. ①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상소를 포기 취하할 수 없다.(제350조)

19. ②

허위증언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된다.(95모38)

20. ① 벌금, 과료,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.(제448조 제1항)



미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.!



서울경찰학원 seoulcop.co.kr ☎ 251-3112